

감정평가서

의뢰인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손현정
건명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지리산 소유물건(2025타경8682)
감정서번호	경북225071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사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경북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박 권 순

감정평가액	삼천삼백칠십구만팔천원정 (₩33,798,000.-)					
의뢰인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손현정		감정평가목적	법원경매		
채무자	-		제출처	대구지방법원 경매3계		
소유자 (대상업체명)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지리산 (2025타경8682)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 조건	-		
목록 표시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25.07.28	2025.07.28	2025. 08. 04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2정8단4무보 이	임야 하	28,165 여	1,200 백	33,798,000
	합계					₩33,798,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 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송원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 건임.

2. 대상 토지의 개요

(2025.01.01)

기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개별지가 (원/㎡)
1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송원리 산181	28,165	임야	자연림	농림 지역	맹지	부정형 급경사	433

3. 기준가치

기준가치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로서 본건의 경우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였음.

4. 기준시점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5. 07. 28을 기준시점으로 정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 의견

5. 실지조사 일자

실지조사는 대상물건이 있는 곳에서 대상물건의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건은 2025. 07. 28 일자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음.

6. 기타사항

본건 토지상에 자생하는 임목은 현지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II.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1.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방식 적용 규정

가. 본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의거함.

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에서는 감정평가방식을, 제12조에서는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조정을 규정하고 있음.

다. 본건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의 대상 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에 따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토지의 감정평가) 등을 적용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 의견

2. 대상물건에 적용된 주된 방법과 다른 감정평가방법

본건 평가에 있어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의거하여,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 및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는 산출과정을 거쳐 토지의 적정가격을 감정평가하였는 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다른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비교 검토하는 절차는 생략하였음.

III. 토지의 감정평가

1. 비교표준지의 선정

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2025. 01. 01 기준)

기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A	청도군 매전면 송원리 산97	26,182	임야	자연림	농림 지역	맹지	부정형 급경사	438

나. 비교표준지 선정 및 그 사유

비교표준지는 감정평가 대상 토지와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유사하여 비교성이 인정되며, 지리적으로 근접한 상기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 의견

2. 시점수정

가. 지가변동률(청도군 농림지역)

기 간	지가변동률(%)	비 고
2025. 01. 01 ~ 2025. 06. 30	0.131	6월까지 누계변동율
2025. 06. 01 ~ 2025. 06. 30	0.016	6월 변동율
2025. 01. 01 ~ 2025. 07. 28	0.146 (1.00146)	$1.00131 \times (1 + 0.00016 \times 28/30)$ = 1.00146

※ 2025년 06월 이후의 지가변동률은 기준시점 현재 미고시된 상태로서 2025년 06월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음.

나. 시점수정치 결정

시점수정을 위하여 생산자물가상승율도 고려 대상이나 생산자물가지수는 일반적으로 전국적인 물가변동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본건 토지의 현실적인 지가변동추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상기 지가변동율을 시점수정치로 결정함.

시점수정치	1.00146
-------	---------

3. 지역요인 비교

본건과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대등함.(비교치: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 의견

4. 개별요인 비교

본건 평가 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개별요인 비교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개별요인 비교치는 각 조건별로 세분하여 비교한 후 격차율을 산정하였음.

가. 개별요인 비교항목

조 건	항 목				
	상업지대	주택지대	공업지대	농경지대	임야지대
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접근도로의 상태, 농로의 상태	접근도로의 상태, 임도의 상태
접근조건	상업지역중심 및 교통시설의 편의성	교통시설, 상가,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도심 및 시장 접근성, 물류시설과의 접근성	교통의 편의성	인근 취락 및 교통시설 접근성, 입목반출 용이성 등
환경조건 (자연조건)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인근환경, 자연환경	일조, 자연환경, 인근환경,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위험 및 혐오시설 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자연환경	일조, 토양, 토질, 관개, 배수, 재해의 위험성	일조, 통풍, 토양, 토질
획지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방위, 고저, 접면도로상태, 이용상황, 토양오염 등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방위, 고저, 접면도로상태, 이용상황, 토양오염 등	면적, 형상, 고저, 접면도로, 이용상황, 토양오염 등	면적, 형상, 경사, 경작의 장애, 이용상황, 토양오염 등	규모, 형상, 고저, 표고, 이용상황, 임상 등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행정상의 규제정도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행정상의 규제정도
기타조건	장래의 동향,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 의견

나. 격차율 산정(임야지대)

토지 기호	표준지 기호	비 교 항 목						격차율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1	A	1.00	1.00	1.00	1.10	1.00	1.00	1.100

- 본건 토지는 비교표준지 대비 임도의 상태, 접근성, 주변환경 및 용도지역 등은 유사하나 획지의 경사도 및 형상이 유리하여 전반적인 개별요인 우세함.

5. 그 밖의 요인 보정

가. 그 밖의 요인 보정의 근거 및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대법원판례 2003다38207판결(2004.5.14. 선고), 2002두 5054(2003.7.25선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 토정 30241-36538, 1991.12.28.) 등에서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인근의 감정평가사례, 지가수준 및 지가동향 등을 기초로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고자 함.

나. 인근 지역의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용도지역	토지단가 (원/㎡)	평가/거래 시점	비고
a	청도군 매전면 송원리 산99	임야	17,058	농림지역	1,000	2025. 02. 21	평가사례
b	동소 산100	임야	92,642	농림지역	1,200	2025. 02. 21	평가사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 의견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용도지역	토지단가 (원/㎡)	평가/거래 시점	비고
c	청도군 매전면 송원리 산103-3	임야	21,402	농림지역	1,200	2025. 02. 21	평가사례
d	동소 산117	임야	26,182	농림지역	770 (평균단가)	2021. 10. 06	평가사례
e	동소 산117	임야	26,182	농림지역	770	2021. 11. 02	거래사례
f	동소 산257	임야	20,231	농림지역 계획관리	2,619	2022. 07. 14	거래사례
g	동소 산276	임야	40,243	농림지역 계획관리	2,658	2022. 07. 14	거래사례
h	동소 산372	임야	28,959	농림지역 계획관리	966	2022. 04. 14	거래사례

다.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산정

1) 선례(사례)의 선정

대상 토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상기 사례 중 기호 a)를 선정하여 적용함.

2) 산출산식

$$\begin{aligned}
 \text{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선례(사례) 기준 표준지의 가격}}{\text{표준지공시지가 기준시점 가격}} \\
 &= \frac{\text{선례(사례)단가}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비교} \times \text{개별요인비교}}{\text{표준지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end{aligned}$$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 의견

3)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기호	구분	단가 (원/㎡)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정가격 (원/㎡)	보정치산정 [선례(사례)기준 /공시지가기준]
1	사례 (기호 a)	1,000	1.00095	1.00	1.050	1,050	2.397
	비교표준지 (기호 A)	438	1.00146	-	-	438	

※ 시점수정치(청도군 농림지역, 2025. 02. 21 ~ 2025. 07. 28) : 1.00095

※ 지역요인비교 : 사례와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대등함.

※ 개별요인비교 (사례 대비 표준지)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자연) 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	격차율
1.00	1.05	1.00	1.00	1.00	1.00	1.050

비교표준지는 사례 대비 임도의 상태, 주변환경, 획지의 형상 및 경사도, 용도지역 등은 유사하나 접근성이 유리하여 전반적인 개별요인 우세함.

라.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본건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상기에서 산정된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인근 지역의 지가수준 및 평가선례, 거래사례 및 인근지역 부동산 경기상황 등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 참작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함.

(그 밖의 요인 보정치 : 2.4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 의견

6. 토지단가의 산정 및 결정

기호	표준지 기호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A	438	1.00146	1.00	1.100	2.40	1,158	1,200

IV.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상기 평가전례와 거래사례가격,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며 상세한 물건별 평가금액은 토지감정평가명세표를 참고하시기 바람.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송원리	산 181	임야	농림지역	2정8단4무보	28,165	1,200	33,798,000	임목포함
합 계								₩33,798,000.-	
				이	하	여	백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송원리 소재 "아랫건태마을" 북서측 원거리에 소재하는 토지로 주변은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순수 산림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 토지까지 차량 및 농기계 등의 접근이 불가하고 인근 취락 및 간선도로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임야로서의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불편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동측 하향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임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임야도상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상의 자생 임목은 토지에 포함 평가하였음.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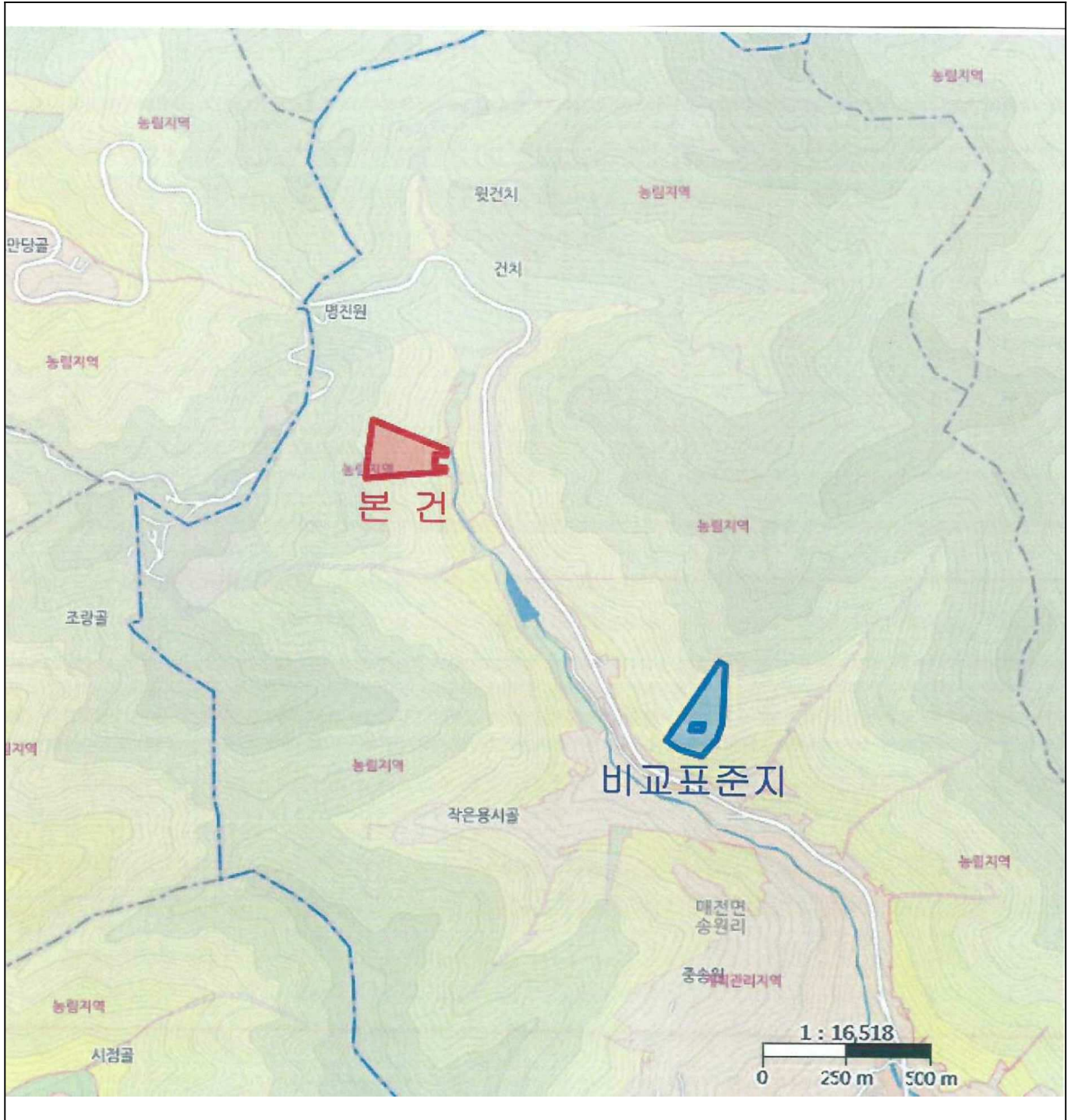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 등은 미상임.

광역위치도



소재지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송원리 산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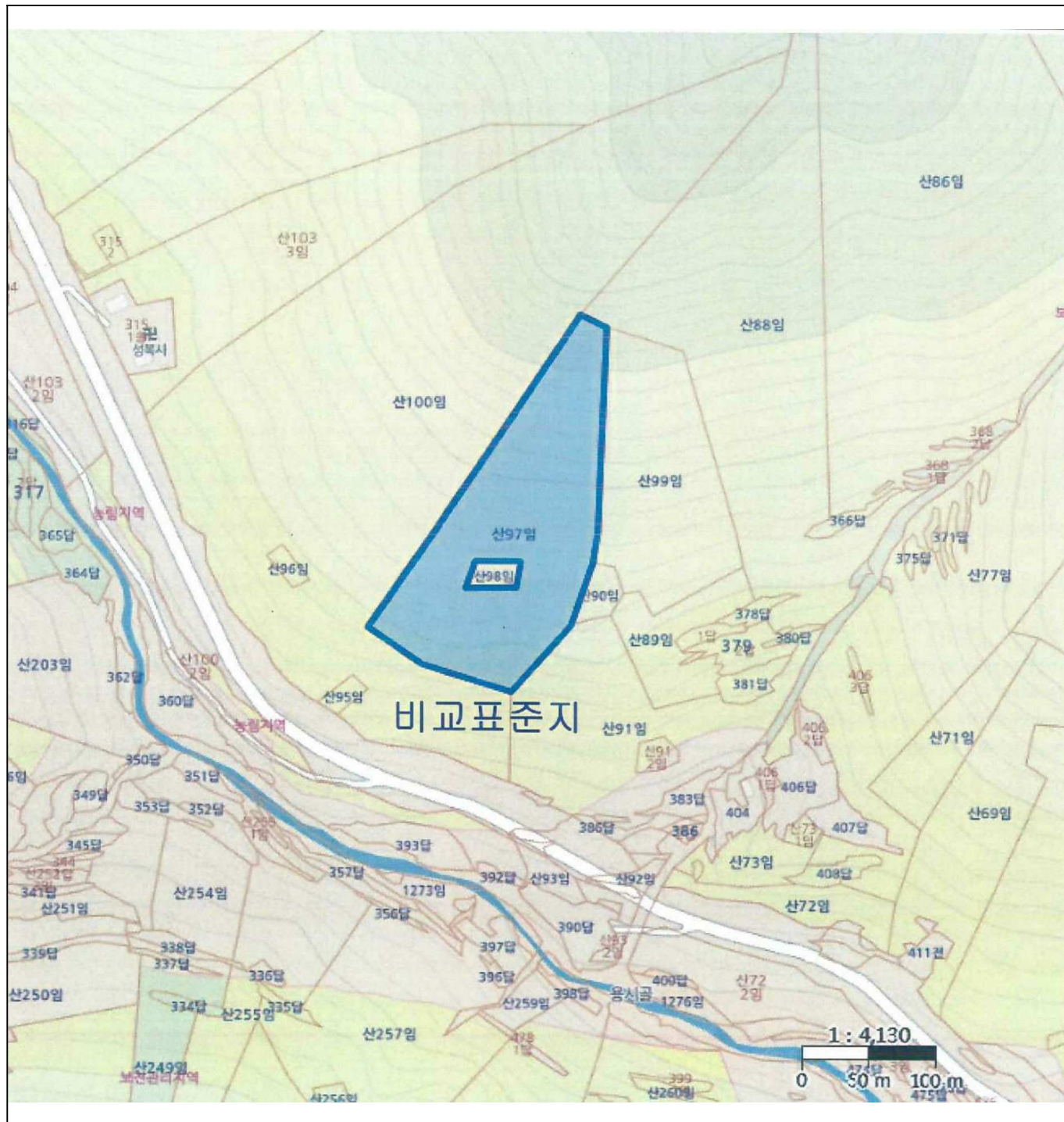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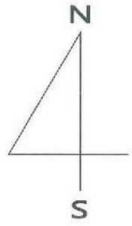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송원리 내 비교표준지



지 적 도



S:1/6,000





